

# 카드뉴스 vol.17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## 유학비자[D-2 소지자]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### 관련

- 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
-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「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」

### “D-2 비자”로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제한사항

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
- 단순노무(아르바이트 수준) 등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“체류자격 외 활동” 신고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
- 소속 대학에서 수행하는 학점취득 등을 위한 연구과제 참여는 가능하나,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참여는 “체류자격외 활동”을 득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

### 비자종류별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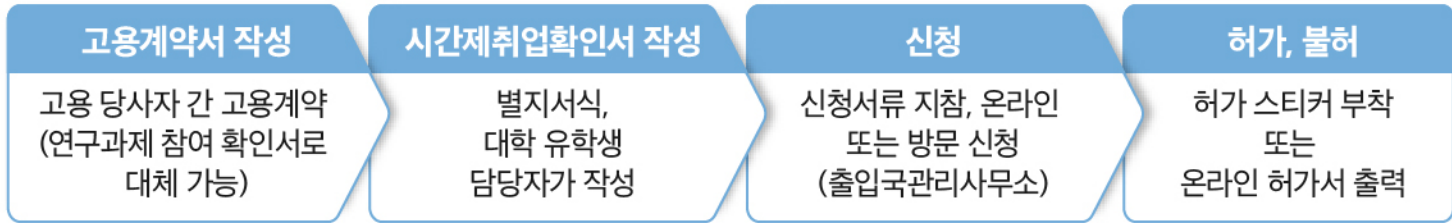
비자종류	연구과제 수행기관	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
D-2 (유학)	본교	학점취득과 관련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만 허용 ※ 단, 학점취득과 관련 없는 과제 참여의 경우 “시간제 취업허가” 필요
	외부	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“시간제 취업허가”를 받은 경우만 참여 가능
E-3 (연구)	본교	허용
	외부	출입국관리사무소에 ‘근무처 추가’ 신고 후 참여 가능
F-4 (재외동포)	본교, 외부	허용

▶ 연구과제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,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

## ● 주요 문의사항

**Q. 유학생(D-2 비자)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.**

**A.**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
시간제 취업허가 시의 별지서식, 신청서류 등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/ 커뮤니티/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Q.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적발된 위반자의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.**

**A.**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1차 적발 시는 당사자 및 그 고용주에게 범칙금을 부가하고,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를 제한하며, 2차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강제퇴거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Q. 시간제 취업허가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?**

**A.** 네. 시간제 취업 허가는 학기단위(6개월)에 맞춰 발급이 되므로 이후에도 연구과제에 계속 참여를 원할 시는 허가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Q. 유학비자(D-2)가 아닌 연구비자(E-3)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**

**외부기관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?**

**A.** 가능합니다. 연구비자(E-3)를 소지하셨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**근무처 추가 신고**를 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산학협력단 응용연구지원팀 이윤심 (☎ 033-250-8292, sim81@kangwon.ac.kr)

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 
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

